

의안번호	2209585
의 회 인	신영대의원
회 답 일	2025. 4. 29.
추계번호	25C2122

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의8 (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)	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의8 (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헌혈에 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
 - 2025년 4월 기준,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추천한 경우는 없으나 개인 또는 단체에게 매년 표창을 하고 있고 표창장(개인), 표창패(단체)와 3~4만원 내외의 부상¹⁾을 지급하고 있음
 - － 2024년에는 개인 31명과 14개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였고, 2023년에는 개인 34명과 11개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였음

1) 2024년 헌혈유공표창의 경우에는 쌀 10kg을 부상으로 수여하였음

□ 보건복지부장관이 훈·포장 추천 또는 표창 수여 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의료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법 제17조²⁾에 따라 국가헌혈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실시 전후로 문진³⁾과 혈액검사⁴⁾를 실시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헌혈 공로자에게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현행 혈액검사의 범위와 현행 국가건강검진의 범위 이상의 검진과 의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

－ 「건강검진기본법」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, 영유아건강검진이 있으며, 건강검진 주기와 항목은 「건강검진 실시기준」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5호에 명시됨

*** [참고자료] 국가건강검진(일반, 암) 실시대상, 주기, 항목**

- 참고로, 현행 국가건강검진에 소요되는 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⁵⁾하는데, 2023년 기준 2조 461억원이 소요되었음

[표 1] 건강검진 수검인원 및 검진비(2023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수검인원(수검률%)	검진비
일반건강검진	17,462,244(75.9%)	677,824
암검진	13,931,731(59.8%)	1,246,657
영유아 건강검진	1,769,726(76.7%)	60,161
구강검진 (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에 포함)	6,847,085(28.3%)	61,492
합계	—	2,046,134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민건강보험공단, 『2023 건강검진통계연보』, 2024. 12.

- 2) 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3) 전자문진: 나이, 체중, 헌혈간격, 핏수, 질병 및 감염병 완치여부, 약물복용내역, 예방접종 내역, 수혈, 임신 여부, 외국여행 여부 등을 문진
대면문진: 간호사와 대면으로 혈압, 체온, 맥박 등을 문진
- 4) B형간염검사, C형간염검사, 매독항체, 간기능, 비예기항체, 혈액형변이형, HTLV항체 등을 검사
- 5)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, 암검진의 경우 공단 90%, 수검자 10% (자궁경부암의 경우 전액 공단 부담) 부담하는데, 암검진의 본인부담금 10%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(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)

-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건강검진 및 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나, 건강검진 및 의료 지원의 범위와 규모, 지원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박선아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741	sunapark@na.go.kr

[참고자료] 국가건강검진(일반, 암) 실시대상, 주기, 항목

□ 검진대상 및 주기

검진 종류	구분	대상	주기
일반 건강검진	지역가입자	•세대주 및 만20세 이상(2004.12.31 이전 출생자)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	2년에 1회
	직장가입자	•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•사무직 근로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•2025년도 대상자	•비사무직 1년 1회 •사무직 2년 1회
	직장피부양자	•만20세 이상(2004.12.31 이전 출생자) •직장피부양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	2년에 1회
암검진	위암	만 40세 이상인 자(1984.12.31 이전 출생자)	2년
	간암	•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(간경변증, 만성 간 질환자 등) 중 만 40세 이상인 자 •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B형 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‘양성’인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	6개월
	대장암	•만 50세 이상인 자(1974.12.31 이전 출생자)	1년
	유방암	•만 40세 이상인 여성(1984.12.31 이전 출생자)	2년
	자궁경부암	•만 20세 이상인 여성(2004.12.31 이전 출생자)	2년
	폐암	•만 54~74세(1950.1.1~1970.12.31 출생자) 홀수년도 출생자 중 폐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-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(일반·생애)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-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	2년

주: 국민건강보험공단, 『2023 건강검진통계연보』, 2024. 12.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으로 변경

□ 검진항목

구분	검진종류	검진항목
일반건강검진		문진 및 체위검사, 흉부방사선검사, 혈액검사(공복혈당, 콜레스테롤 등), 요검사, 구강검진 등
암검진	위암	위장조영검사, 위내시경검사, 조직검사
	유방암	유방촬영(양측)
	대장암	분변잠혈반응검사, 대장내시경검사, 조직검사
	간암	간초음파검사,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
	자궁 경부암	자궁경부세포검사
	폐암	저선량흉부CT

주: 국민건강보험공단, 『2023 건강검진통계연보』, 2024. 12.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으로 변경